

제 10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11월 22일 1일간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회의구성:

1) 출석의원: 16명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金八用, 李文吉, 鄭應杓, 朴贊圭,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2) 불참의원: 5명

金三星, 文宅鎬, 金吉煥, 金慶禧, 金采庸

3) 출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河東鉉 시장, 吳在鵬 건설과장, 梁甲承 관리과장, 尹柱炫 사회과장

4. 개회식 절차: 생략

5. 회의사건:

1) 의결사건

- (1) 목포시의회 의원회비 변상금조례 개정의 건
- (2) 시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
- (3) 목포시 오물처리 문제의 건

2) 보고사항

- (1) 제 9회 임시의회 회의록
- (2) 제 7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3) 제 4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 (4) 동목포역 설치허가 취소연기 교섭경과 보고
- (5) 전 만호동장 김성곤의 공금유용에 대한 경과 보고

6. 개회선언

7. 토의사항:

◇ 朴燦大 서기

- 전 만호동장 김성곤 공금유용에 대한 처리 전말 보고서 낭독이 있었음.(생략)

◇ 李文吉의원

- 동목포역 설치허가 취소허가 취소연기 교섭경과 보고가 있었음.(생략)

◇ 劉正斗 의장

- 목포상이군인회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음.(생략)

◇ 李福柱의원

- 용당도선장 문제에 있어서 시직영으로 하느냐, 번영회에 대행시키느냐는 여러 말이 있는데 금반 경찰서에서도 도선장에 대해서 운영권을 달라는 것은 아니나 운영하면서 자체의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상당한 부담금이 삭감되게 될 것이니 대행케 하여 달라는 말도 있다. 여하튼 이번 기회에 적절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나 번영회에 이양시켰으면 한다.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짓자 긴급동의

◇ 劉正斗 의장

- 용당 도선에 있어서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번영회에서는 시민의 복리와 시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경찰서에서는 전시하 치안을 확립한다는데 재정에 커다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되면 사선을 취채하는데도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막는데 힘이 될 것이며, 정원을 넘는 것도 책임을 질 것이니 현재까지는 예산 그 이상을 우리 시에 납부케 하도록 계획하고 남은 것은 경찰서나 번영회에서 쓰게 하면 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토의하여 결정해 주기 바란다.

◇ 陳福春의원

- 이 문제는 중대한 것이며, 신중 토의할 문제이니 오후 회의로 돌리고 오전 회의를 휴회할 것을 긴급동의

◇ 金永完의원

- 목포시의 예산을 알지도 않고 무조건 결의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찰서 재정이 얼마나 서 있는지, 번영회 재정은 얼마나 서 있는 것도 모르면서 넘겨준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오늘 오후라도 경찰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번영회 총무부장에게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알아야 될 것이다.

◇ 鄭應杓의원

- 도선료를 이제까지 500圓씩을 받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배액을 증가해서 받고 있는데 아직 이 수입에 대한 정당한 통계도 보지 못했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번영회에 주네, 경찰서에 주네 하는 논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 점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에서 어떻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 河東鉉 시장

- 도선장 경영에 있어서 번영회와 경찰서가 이미 어느 정도 말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 모양 같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거북한 입장에 있지만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시가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번영회라든지 서가 그러한 환경에 있다면 시 수입을 확보시키면서 그 이상 능률을 올려줄 수 있는 청부식으로 맡아줄 용의가 없느냐 할 때에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대답해 드리겠다.

그리고 3분지 1의 수입 배당의 말이 있는데 그렇게는 행정책임자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만일 시 수입을 확보하고 번영회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한 방책을 세울 때 행정부에서 넘겨줄 용의가 있으냐라고 한다면 용의가 있다.

◇ 劉正斗 의장

- 3분지 1이란 가산에서 표준한 것이지 결코 3분지 1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오후라도 번영회와 경찰서측의 구체적 의사도 듣고 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 李在洪의원

- 경찰서나 번영회측에서 정식으로 시장이나 의장에게 말한 적이 없는가?

◇ 鄭應杓의원

- 정식 요청이 없는데 이것을 토론할 필요가 없다.

◇ 林一男의원

- 시장께서 말씀한바 같이 시 재정에 별로 차이가 없고 예산을 확보해 줄 것 같으면 대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행정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묻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솔선해서 결의할 필요가 없다.

◇ 李文吉의원

- 시 재정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줄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 행정부에서 안을 세워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결정하면 좋겠다.

◇ 李在洪의원

- 내무위원회로 넘긴다는 것도 안되니 조사위원 5명을 선정해서 서나 번영회에 줄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차기 의회에 상정키로 하자 긴급동의(동의를한 李福柱의원 수락)

◇ 明南喆의원

- 도선장 취급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실지에 있어서 만일에 준다고 할지라도 1할 이상은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1할 이상은 시에서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며, 만일 받는다면 목포시민이 용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 李小圭의원

- 용당 도선장 문제에 있어서 원칙으로 1등 도로를 접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관리권은 목포부 윤(시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이상 관리권을 준다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서가 이익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사선을 금지해 주고, 안 준다고 해서 사선을 묵인한다 하는 의회가 협조하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술면을 신중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劉正斗 의장

- 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선표를 판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다.
- 일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5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자는데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3명중 가 9, 기 4, 가결

◇ 劉正斗 의장

- 조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 하였음
- 李在洪, 吳世一, 金永完, 李福柱, 明南喆의원

◇ 劉正斗 의장

- 휴회선언 (오후 1시 15분)

◇ 李小圭 부의장

- 속회선언(오후 2시 30분), 劉의장 출장으로 인하여 대리함

◇ 李小圭 부의장

- 의원비용 변상금조례 개정의 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람

◇ 鄭應杓의원

- 원안대로 통과하자 동의 (재청 가결)

◇ 金永完의원

- 청과물시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경과를 듣자 긴급동의 (재청)

◇ 河東鉉 시장

- 청과물시장 문제에 대한 경과 설명이 있었음
(설명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 金永完의원

- 목포에서 제일 크게 청과에 대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목포원예조합인데 원예조합을 산다고 하면, 총면적이 47만3천7백평쯤 된다.

그 액을 따진다면 1조1억8천1백만圓으로 환산해 나오는데 현재 일정한 통계는 약 22억6천5백만圓 정도쯤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원예조합에 있는 분들하고 손을 잡아야만 원만히 해결될 것이므로 이 단체를 살려서 구성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시장을 설치한다는 안을 가결시켜 주기를 동의 (재청)

※ 청과물시장 설치에 대한 토론 약 20분간 (내용생략, 속기록 참조)

◇ 李小圭 부의장

- 청과물시장 설치장소는 현 원예조합 자리로 하고 운영방법은 허가 난 후로 토의하자는 金永完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5명 전원 가결

※ 시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

◇ 河東鉉 시장

- 하이야 처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내용 생략)

◇ 李福柱의원

- 하이야를 구입할 당시에 의장과 몇몇 의원이 시장을 찾아가 계약서를 보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2천7백만圓의 가격으로 되었으며, 만일에 부당하면 6개월 이내에 물릴 수가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특히 법률을 전공한 부의장께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매각할 것이 아니다.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고 2천7백만圓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하이야에 비추어 가격이 지나친 것 같고 내용 계약이 천만圓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써 있는데 이것을 공매 교섭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매매당시의 2천7백만圓으로

해줄 것을 주장

◇ 李在洪의원

-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포-트 일식에 대하여 2천7백만圓이라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일식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며, 1천만圓의 내용계약이 뚜렷이 써 있는데 실지로 2천7백만圓을 지불했는가?

이 문제가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또 하나는 河시장이 이 하이야가 쓸데가 없어서 팔고 트럭을 살려는가?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河東鉉 시장

- 하이야가 쓸데없는 까닭으로 판다는 의도는 없으며, 재정이 있으면 그 하이야를 그대로 두고 트럭을 사겠는데 현재 목포시의 재정은 하이야를 놔두고 트럭을 살 수 없고, 둘째 1천만圓 운운이라는 것이 써 있는데 직원이 가서 자세히 조사하였던 바 7월 18일자로 확실히 2천7백만圓에 구입했는데 자동차 회사가 좀 탈세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 회계계장인 이필재와 이중계약을 했던 것이다.

자동차 인수에 있어서는 회사자금이 넉넉치 못하므로 일시 전불로서는 곤란하므로 우선 1천만圓을 선불하고 잔금 1천7백만圓에 대하여는 6개월 기간으로 분납하겠다는 공문이 와있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는 결제만 해주기 바람.

◇ 林一男의원

- 현재 하이야를 팔고 쫓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재정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니까 자동차회사에 직접 하이야를 돌려 주게 하는 동시에 쫓차와 화물차로 바꿀 수 있게 거둬 요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 李小圭 부의장

- 그러면 자동차를 처분하자는데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기 바람
재석의원 15명 중 전원 거수로 가결

◇ 金南鎭의원

- 하이야를 처분하는 것은 시장에 일임하자 동의

◇ 林一男의원

- 처분에 대하여는 자동차회사에서 지금 1천만圓을 주고 6개월내로 1천7백만圓을 분납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1차 입찰시킨 후에 2천7백만圓 이상 낙찰되면 개인한테 팔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회사에다가 팔도록 하자 개의

◇ 朴贊圭의원

- 공매처분하면 좋겠다.

시 자체로 봐가지고 과히 손해가 안된다면 직접 처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 李在洪의원

- 입찰방법으로 매도해서 2천7백만圓을 받을 리가 만무하고 또 입찰했다가 그 돈이 못된다고 해서 회사에 요청한다면 이상히 생각할 것이니 그대로 회사에 돌려준다면 6개월내에는 2천7백만圓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되니 입찰로써 매도해서는 안된다.

◇ 李小圭 부의장

- 여하튼 처분하는데는 전원이 찬성했고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손해 아닐 정도로 시장에게 일임하자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기 바람

재석의원 15명 전원 거수로 가결

◇ 明南喆의원

- 이 자리에 동장이 와 있는데 동장들에게 동 운영 실정을 들어보기로 하자 동의

◇ 金永完의원

- 물론 동회의 제반 행정에 있어서 애로가 많이 있을 것이나 정식 의회에 상정시키지 않고 어느 개인이 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반대하겠음

※ 동장으로부터 청취하자는데 찬성하는 측과 반대측의 대립된 의견교환이 약 10분간 계속 되었음

◇ 李小圭 부의장

- 동회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 목포시 오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 주기 바람

※ 목포시 오물처리 문제에 관한 건

◇ 金慶禧의원

- 오물처리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위원회의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내용생략)

◇ 李文吉의원

- 문교사회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지만 동에다가 이관 시켜서 하게 되면 위생사무소가 될 것이며, 직원을 몇 명 두게되니 이런 점으로 보아 저는 여기에 반대 하겠음

◇ 李文吉의원

- 조사위원으로 李福柱의원을 1명 첨가할 것을 수정 동의 (재청 가결)

◇ 李小圭 부의장

- 회의록 서명에 陳福春, 林一男의원을 지명

◇ 李小圭 부의장

- 폐회선언 (오후 5시 20분)

◇ 폐회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11월 22일

議長: 劉正斗

議員: 陳 福 春

”: 林 一 男

作成者 書記: 千 世 鳳

제10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오 전)

◇ 劉正斗 의장

- 제10회 시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개인과 자기 직장 외에 멸사봉공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한달에도 수회씩 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맡은 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도 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봉공한다고 나온 이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 시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의회는 국회에 비해서 출석률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석률을 본다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가령 정국을 논한다든지, 무슨 장관의 신임을 묻는다든지 할 때에는 국회에 전원이 출석하는데 무슨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또는 중요한 무엇을 심의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의결기관으로써 중요한 의무를 완성할 때에는 출석률의 성원이 미달되어 유회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있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목포시의회는 출석률이 적어 언제나 성원미달로써 유회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좀 바쁘시지만 종전과 같이 나와 주심으로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의원 비용변상조례 개정의 건과 시유재 자동차 처분이라던가 이 밖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간사

- 이상으로써 개회식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바와 같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에게 출석 안하시는 의원이 사유를 말씀드리고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셔야 되게 되었는데 본

회의에서도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행방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21명 가운데서 출석의원이 10명이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사유를 들어 가령 李福柱의원께서는 학교 아이들을 교육중이라든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무당국에서 처리하기 좋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제9회 임시회의 회의록 낭독

◇ 李小圭 부의장

-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 제7회 내무위원회 보고: 간사 대독

※ 제4회 문교사회 위원회 보고: 幹事 대독

◇ 劉正斗 의장

- 보고사항 마쳤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서

◇ 朴燦大 간사

- 전번 사무감사 때에 공금부정 이용에 대해서 李小圭의원과 金南鎭의원께서 감사보고와 신문보도가 있어서 잘 아는 바인데 사무당국에서는朴시장에게도 정식으로 공문을 내고 개인적으로도 통첩을 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대 민선 시장 선거운동으로 밀려가지고 河시장을 모시게 되자 신동장 고용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동장의 소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 무슨 비료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왕래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 만호동장 김성곤 공금유용에 대한 처리 전말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전 만호동장 김성곤 공금유용에 대한 처리 전말 보고서 낭독

◇ 劉正斗 의장

-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 李文吉의원

- 저는 동목포역 설치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설치위원회 위원은 다섯 사람인데 순천철도국에 허가연기를 교섭하러 갈 李在洪의원이 마침 감기로 못 가게 되어서 네 사람이 순천철도국에 18일 출발했습니다.

순천에 도착한 결과 국장님이 여수에 긴급한 일로 안 계셔서 거기 계신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김형중씨가 또 행정계획 담당자로 있는 뿐인데 여수로 전화를 걸어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河시장님이 오신 줄 알고 쫓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河시장님의 대리가 되었지요.

국장님과 국내 각 과장 그리고 우리 교섭위원 네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朴在祐시장 문제로 옥신각신해서 늦게 온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하기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니까 국장님 말이 동목포역 문제가 장관한테 제출돼 가지고 보이코트 되어서 또다시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국장회의서도 부결되어서 참 어려운 것이었다고요.

河시장님도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첫째, 돈이 문제인데 지금 돈은 없고 허가취소 연기만 하면 돈을 만들어서 할 것이며, 약 2천만圓 정도라도 세우려 했더니 국장 말이 2천만圓은 가지고 지금 곧 내려가서 하오. 연기를 새달 말일까지 할 것이니 보고를 해 주시오 하는데 밑에 과장들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단 말이요. 180m를 하는데 90m로 할 수 있을 것이냐고, 그러자 국장이 있다가 그렇게 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늘려서 해주고 9천백만圓을 우리는 국고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사만 착수해서 이것만 끊어주시오. 그리고 거기에 전화선이나 전기가설은 부족품만은 해 주시오 했더니 전화가설이나 전기가설도 모든 부족품을 주셔서 공사만 착수한다면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현지에 가서 공사를 함으로써 연기를 받았다고 완전히 볼 것 같습니다. 실은 연기를 받았다는

것도 우리 추진위원회를 열성서 이에 추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찾아가서 허가 승락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철도국에서 도리어 많은 협력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경과를 말씀드리면 오다가 광주에 들렀습니다.

광주에는 수도시설비라고 해서 1천7백만圓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신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에 들러 건설과를 찾아갔더니 건설과장이 1천7백만圓은 벌써 찾고 목포는 2천만圓이 올 것인데 아직 안 왔는가? 하고 묻더군요. 종전에 비하면 여수는 9천만圓인데 목포는 2천만圓입니다.

여수는 가까워서 부산에 가서 속닥속닥 하니깐 된단 말이요.

건설과장이 목포는 전적으로 행정당국이나 목포시에서 중앙에 가서 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지연되지 않소? 사실 여수는 목포에 비해서 읍도 안됩니다. 목포에서 좀더 활약해 주시오. 행정당국에서 시장님 잘 들어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금월 20일경에 중앙에서 건설국장이 오신다고 하는데 환영이라도 해서 목포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광주 건설과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조금 활약함으로써 목포에 발전이 오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런 정도로 보고를 끝마칩니다.

◇ 劉正斗 의장

- 12월말까지 연기되었습니까?

◇ 李文吉의원

- 이달 말까지 착공을 해야지요.

◇ 朴連太 간사

- 그러면 탄원서가 있으니 읽어 드리겠습니다. =탄원서(趙節子) 보고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목포 상이군인회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분회장께서 말씀 하셔야 할 것인데 제가 대리로 말씀드립니다. 상이군인 원호문제는 전시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이군인이 민간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대한상이군인원호회에서는 내무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12억 한도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상이군인분회에서도 그러한 모집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무조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음식점, 다방 같은 데서 그것도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채나 채권 같은 것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목포 상이군인 원호회에서도 어제 빅토리 다방에서 각 기관장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안내장이 있었던 것인데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제 모인 자리에서 대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형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각 기관을 방문할 것인데 구체적 방안은 오는 25일경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께서도 알아주십시오. 하고 분회장으로부터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 李福柱의원

- 의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용당도선에 대해서 상의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용당도선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거기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용당도선장 문제에 있어서 진작부터 시의원들 가운데 시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계시고 번영회에서 운영케 하자는 의원들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이 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모두들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도선장에 대해서 그 운영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운영함으로써 시에서 청부를 맡아 가지고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면 시민에게도 상당한 부담금이 삭감하게 될 것

이라고 이런 정도의 교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시에서는 되도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해주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비용도 들을 것이요. 여하튼 이번 기회에 경찰서에나 번영회에다가 대여를 시켜서 적절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나 번영회에 이양시켰으면 합니다.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동의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지금 李福柱의원으로부터 목포도선장 운영에 관한 타개책에 관하여 우리 시로써 확고부동한 기본 방침을 세우자는 긴급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도선장은 국도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데 특히 목포시장한테 도선장 관리권을 허가해 가지고 목포시장 책임하에 국토망을 연결시키는데 책임을 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자 시에서 직영해야 될 것을 어느 개인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그 수입으로 만족해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수입에 있어서 지금은 상당한 증가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 이 도선장 문제가 제기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시민 복리의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선장 계획에 있어서는 도선하는데 대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이외에 태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원 이외 태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고장이 난다 할 것 같으면 사선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선의 취체라든가 정원을 넘는다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달라는 것은 무엇이나, 번영회에서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의 하나는 시민의

부담에 의한 방법이요, 하나는 시 재정의 원조를 받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영회에 사업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 행정을 추진시키는데 시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를 가져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번영회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장을 번영회에서 이양하는 것도 시민의 복리를 가져오는데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행정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치안행정을 확보하는데는 국가 예산에 상당한 보조가 있고 예산 배부가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하 치안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애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경찰서 직원들은 종이도 쓰지 말고 아무 용지도 쓰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시에서 직영 안하면 혹 사선을 취재하는데도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막는데 커다란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까지 예산 그 이상의 수입을 우리 시에 납부케 하도록 계획을 하고 그 이상 남는 것은 경찰서와 번영회에서 쓰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수입에 대해서 원만히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삼각에서 다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잘 토의해서 결정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 陳福春의원

- 의장!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토의는 오후 회의로 돌리고 점심을 먹기로 합시다. 긴급동의입니다. 추워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 金永完의원

- 도선장 문제에 있어서 의장에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해 나간다 어쩐다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경찰에 돌려 가지고 사람을 많

이 태운다는 이것은 현 사회에서는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또한 번영회에 있어서는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나가는데 이양을 한다는 것도 별로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운영예산을 보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가? 행정당국에 말도 물어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결의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서나 번영회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저 한 사람으로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목포시의 예산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 장소에서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재정이 얼마나 서 있는가 또는 번영회 재단을 얼마나 서 있는가 모르고 경찰서나 번영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오늘 오후라도 경찰서에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관 그리고 번영회에서 총무과장에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러한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시 자체에서도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 왔는가, 이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입니다.

◇ 鄭應杓의원

- 金永完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500圓씩 받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배액을 증가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지 증가해서 받고 있는 수입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나와 있는가? 정당한 통계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한 수입면도 모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번영회를 주네, 경찰서를 주네 하고 시 자체의 수입면도 통계를 알지 못하는 논의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다는 것은 부적당한 일인 아니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답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河東鉉 시장

- 도선장 운영에 있어서는 번영회 하고 경찰서하고 이미 어느 정도 말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거북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의 책임자로서는 시가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 번영회나 서에서 그러한 환경에 있다면 시 수입을 확보시키면서 그 이상 능률을 올려줄 수 있는 청부식으로 맡아줄 용의가 없느냐 할 때에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3분지 1은 시로, 3분지 1은 번영회로, 3분지 1은 경찰서로 이익이 있게 하자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번영회나, 경찰서나, 그렇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책임자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에서 제안을 하지 않은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시 수입을 확보하고 번영회도 원활히 할 수 있고 한 방안을 세운다면 행정청에서 준다는 용의가 있느냐 하면 용의가 있습니다.

◇ 劉正斗 의장

- 3분지 1을 가산해서 표준한 것입니다. 결코 3분지 1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당국으로부터 의견이나 방침도 들으셨습니다. 오후라도 번영회측하고 경찰서측의 구체적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李在洪의원

- 경찰서나 번영회측에서 정식으로 시장이나 의장에게 말한 적은 없지요? 모 의원간에 개인적으로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말이 없는 때에는?

◇ 劉正斗 의장

- 그래서 시로서는 시 수입에 커다란 이상이 없는 한 번영회나 경찰서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에서 어떠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번영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참고로 해 가지고 주던가 안 주던가 하는 것입니다.

◇ 鄭應杓의원

- 그러니까 요청이 없는데 이것을 토의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일동 소란)

◇ 劉正斗 의장

- 방침만...

◇ 林一男의원

-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재정에 별 착오가 없고 또 시 예산을 확보해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대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슬선해서 결의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 劉正斗 의장

- 시장님 그 점을 명백히 해 주십시오.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李文吉 의원

- 행정장은 그저 줄 수 없다.

그러나 행정장으로써 번영회나 경찰서에서 시의 재정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줄 용의가 있다 했으니까 오후에 하는 것보다도 행정부에서 어떠한 안을 세워 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결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 李在洪 의원

- 지금 문교사회위원회니 내무분과위원회니 하지만 신문을 보면 오늘도 유회, 분과위원회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도선 관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합니다. 내무분과위원회로 넘긴다는 것도 안되니깐 조사위원5명을 선정해서 다음 의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시에서 서나 번영회에 줄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기로 합시다. 5명으로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다음 회의 때 회부하게 합시다.

李福柱의원 받아 주시겠습니까?

◇ 李福柱 의원

- 받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조사위원 5명을 선정해 가지고 5명으로 하여금 예산면 이라던가 충분히 조사 검토해서 다음 번 회의에 상정시키자는 긴급동의입니다.

◇ 李在洪 의원

- 5명의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조사위원 5명을 선정해서 결정케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 明南喆 의원

- 도선장 취급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실지에 있어서 만일에 준다고 할지라도 1할 이상은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1할 이상은 시에서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받는다면 목포시민이 용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李小圭의원

- 용당도선장 문제에 있어서 법규에도 3등 도로를 접촉시킨 것으로써 그 관리권은 목포부 윤(시장)으로 하는 것이 용당 원칙으로 되어 있는 이상 관리권을 준다는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포시장이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법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서가 이익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사선을 금지해 주고 이익의 일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선을 묵인한다.

이런 것에 시가 아니고 의회가 협조하는 현실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용당 시민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면 취재할 수 없으니까 준다. 또 정원도 취재가 심할 것이나 이런 것은 본인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변영회는 시 행정을 도와서 시 운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변영회의 일

인데 거기에 어떠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당국의 책임자는 시민의 손해가 없는 범위에 의해서 상의에 응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2부니 3부니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도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위원은 5명을 선정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기술면을 신중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런데 지금 그것은 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은 아니고, 표를 판매하는 것을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선을 지휘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 공무원이 그대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신분보장도 같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진상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부만을 묻겠습니다. 3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자는데 가(可)라고 생각한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채석 13명 중 가 9명, 부 무, 기권 4

그러면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李在洪, 吳世一, 金永完, 李福柱, 明南喆의 원.

그러면 점심을 드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대로 산회하고 오후 2시부터 속회하겠습니다.

(산회 오후 1시 15분)

(오 후)

◇ 李小圭 부의장

- 제가 대리해서 오후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원비용 변상조례 개정의 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 (자료미상)

- 교육위원을 1만2천圓으로 했으니까 우리 의원도 올리자는 말은 아니지만 행정당국에서 잘 조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李小圭 부의장

-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없으시죠.

◇ 河東鉉 시장

- 청과물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시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목포시청 산업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부윤과 내무과장이 타협해 가지고 일개 상인들에게 쓰게끔 승낙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과장이니까 산업과장하고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인데 타협도 없이 지금 말하는 나락마당이 처분수속이 다 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인이 산업과장에게 와서 공설시장을 지으니까 50만圓에 내주어도 좋으냐 해서 산업과장은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은 이것을 반대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나락마당이 가치없이 노는 장소가 되어 가지고 있지만 미곡이나 면화같은 것이 다 나락마당에서 집단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이 나락마당은 목포시민이 긴요하게 쓰고 있으니 만큼 만일 공설시장을 만든다면 목포시민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역설한 결과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임원들이 회합하여 가지고 목포의 중요한 요지를 처분하려고 한다고 모자를 쓰고 산업과장이 나락마당을 시장화 한다는 목적을 질문해야 된다고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한이도 있었습니다.

나락마당이 지금 한푼의 가치없이 놀고 있지만 다른 것으로 쓴다는 것은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목포의 나락마당이라는 것은 금과 옥같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상사에게도 항의를 했습니다.

목포로서는 이러한 요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과물시장으로 매도할 수 없다고 절대로 반대했던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었는데 선박표식소가 해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항선표식소에서 관계가 조금 있었는데 북종하지 않는다고 산업과장을 기압을 주어야겠다고 상당히 위협을 주었습니다. 장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일무이한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밀려 나오다가 향선표식소가 분리되어서 독립관청이 된 후로 표식소소장이 최후까지 고집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청과물 시장의 전후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小圭 부의장

- 시장님은 어떤 곳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河東鉉 시장

- 저는 그전부터 청과물 장소를 현 원예조합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 金永完 의원

- 지금 원예조합 앞에 2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사놓으면 장소가 넉넉할 것입니다.

◇ 李小圭 부의장

- 귀속 재산입니까?

◇ 金永完 의원

- 개인 재산입니다.

◇ 李小圭 부의장

- 비용은?

◇ 金永完 의원

- 1천5, 6백만圓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재정면을 가지고 직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河東鉉 시장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결정 안되는 까닭은 근본적 설계를 하지 않아서 총 공사액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살림이나 단체살림이나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자금을 넣으면 그 살림은 원활히 될 것입니다.

청과물 시장도 거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법 인화 시켜서 법인단체로 사용하고 시에 사용료만 납부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복안입니다.

◇ 李小圭 부의장

- 법인단체를 구성해서 주식회사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만 즉, 수수료만 징수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타협해 봅시다.

◇ 金永完의원

-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목포에서 제일 큰 청과업체는 목포원예조합입니다. 문승모씨가 관계하고 있는데 총면적이 원예조합중에서 47만3천7백정보 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액을 따진다 할 것 같으면 1조1억8천1백만圓으로 환산해 나오는데 현재 일정한 통계는 약 22억6천5백만圓 정도 될만큼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을 직접 넣으면 농민에게도 이익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살려야지 이 단체를 살리지 않고 그것을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을 설치한다는 안을 가결만 시켜 가지고 바로 중앙에 올라가서 2, 3일이면 다 됩니다.

결의서가 첨부안된다면 중앙에 가서 승인 안되니까 이 자리에서 가결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목포시장에 알맞는 조직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 金南鎭의원

- 그러면 이 허가를 진행 시키는데 서류 내용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까지 들어 있습니까? 허가만이 들어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永完의원

- 업무규정, 판매수량, 어느정도 사람을 쓴다는 것, 즉 직원은 몇 명 가량 쓴다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李福柱의원

- 금년도 가을철 김장 시기가 됐는데 종전 나주 등지에서 군 후방사업이라면서 버스로 장터로 반출한 경향이 있었는데 만일 그러한 일을 군에서 강행한다면 그런 것도 법률로써 저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 金永完의원

-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육군 хол병감실에서 지정한 곳이라 해서 목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육군본부에서 왔다면 10圓씩 무 한트럭을 샀었는데 무우금이 6백圓이니 4백圓은 누가 물 것이냐 해서 말썽거리가 되다가 무는 많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 와서 조사해 보았으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못하게 한답니다.

◇ 李文吉의원

- 결의서를 첨부해야 허가를 준다고 하니까 목포시장으로서 할 것인가? 어떠한 조직체로써 허가원을 제출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 金永完의원

- 2억圓을 늘인다든지 가른다든지?

◇ 李文吉의원

- 그러니 목포시장의 명의로 허가를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金容俊 산업과장

- 시장법이 거반 10월 2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시장법 낭독)

조금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저촉되리라고 믿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거기에는 10억몇만圓이 필요한 것 뿐이지 일단 결의되어서 허가장만을 내놓고 나중에 목포시에서 시설을 안한다 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 河東鉉 시장

- 나중에 시설을 다시 하려면 재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마 수속하기 전에 장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요.

◇ 劉正斗 의장

- 만일 허가낼 때 신청한 것을 안할 때 취소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 河東鉉 시장

- 그런 것은 다른 조문에도 없는데요. 허가가 나오면 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 李福柱의원

-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金永完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채석의원 15명 중 가 15로 가결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과물시장 장소는 현 원예조합 자리로 하기로 하고 모든 서류는 그렇게 만들기로 가결보았습니다. 운영방법은 허가난 후로 토의해서 하기로 합니다.

◇ 河東鉉 시장

- 목포시청에서는 특히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처분하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도 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필요한 이유는 수원지가 약 50리 이상 60리가 되는데 중간에서 노출된다고 할 것 같으면 트럭이 있어야 급속히 가서 수리해야 됩니다. 바늘구멍만한 것이 시간이 경과하는데로 터져서 구멍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커 집니다.

물론 이것은 1년에 수회에 불과합니다만 이럴 때에는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필요한 트럭을 구입하고 타고 다니는 것은 다음

에 산다든지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 朴贊圭의원

- 현재 하이야를 매도한다 할 것 같으면 시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河東鉉 시장

- 예- 트럭 한 대와 쫓차를 살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산다면 두 개 다 살 수 있습니다만,

◇ 李福柱의원

- 오랫동안 문제가 된 하이야 문제인데 하이야를 처음에 목포시에서 구입할 당시에 몇몇 의원이 모여 가지고 시장을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간 한 사람으로서 계약서를 현의장 그리고 몇몇 의원이 같이 본 바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2천7백만圓의 가격으로 되어 있었고 만일에 부당하면 6개월 이내에 물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법률을 전공하고 계신 劉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것 보다는 아직 하이야를 산 6개월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2천7백만圓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하이야에 비추어 가격이 지나친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기록한 바에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계약이 1천만圓이라고 써 있는데 물론 이것이 1천7백만圓이라는 돈이 조금 적다면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매 교섭해 가지고 현차와 계약금을 매각 당시의 2천7백만圓으로 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포오드 1식에 대해서 2천7백만圓이라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1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운전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지금 1천만圓 계약이 뚜렷이 써 있는데 그러면 실지로 지불했는지요?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河시장님이 트럭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 자동차가 쓸데가 없어서 팔려고 하는 것인지요?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河東鉉 시장

- 답변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쓸데없는 까닭으로 판다는 의도는 없습니다. 재정이 있으면 그 하이야를 그대로 두고 트럭을 사겠는데 현재 우리 목포시의 재정은 하이야를 놔두고 트럭을 살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는, 1천만圓 운운이라는 것이 써 있는데 실은 어제 우리 직원을 이 자동차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한 후로 6개월 후면 수선해 주겠다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까닭으로 현재 수선하는 금액이 3백 얼마에 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한가지 요구 조건이었고 수리를 못 해준 할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7월 18일자로 확실히 2천7백만圓이 구입되었으며, 직원이 자세히 조사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회사로부터 탈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 회계주무자 이필재에게 내약하였다 하여 즉, 다시 말하면 2중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좀 탈세하기 위해서 두가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인수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이 풍족치 못하므로써 시지 전불로서는 인수가 곤란한 바이며, 1천만圓을 선불하고 잔금 1천7백만圓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으로 분납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 朴贊圭의원

- 자동차 공장에다가 팔게되면 우선 현금 얼마받고 6개월간에 준다할 것 같으면 지금 매각하는 것이 이익면에서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河東鉉 시장

- 이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결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林一男의원

- 이것을 수리하는데는 상당합니다. 법률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계약상으로 6개월내에 하이야를 돌려 보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이야를 팔고 쫓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재정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니까 자동차회사에서 직접 하이야를 돌려주게 하는 동시에 쫓차와 화물차를 하이야와 바꾸게 거둬 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

다. 다른 방도보다는 오히려 나올 것 같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아주 결의합시다. 자동차를 처분하는데 찬동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전원 거수)

◇ 金南鎭의원

- 그러면 그것을 처분 방법은 시장에 일임합시다.

◇ 劉正斗 의장

- 처분에 대하여서는 시장에게 일임하자는 金南鎭의원의 의견 동의가 있습니다.

◇ 林一男의원

- 처분에 대하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 1천만圓을 주고 6개월내로 1천7백만圓을 준다는 말을 들어보고 분납한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다 받을 자신이 있을 것이니까 자동차에 대하여는 손해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입찰 시킨 후에 2천7백만圓 이상이면 개인한테 팔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니까 자동차회사에다가 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의합니다.

◇ 朴贊圭의원

- 공매처분하면 좋을 것입니다. 분납으로 받게 된다면 관청과 관청 사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회사나 시청에서 한푼도 더 안줄 것이니까 시 자체로 봐가지고 과히 손해가 안된다면 직접 처분하는 것이 제일 나올 것이다.

◇ (자료미상)

- 나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입찰이나 매도에서 2천7백만圓을 받을리는 만무하고 또 입찰했다가 그 돈이 못 된다고 해서 회사에 요청한다면 1천만圓 이상 안줄려고 하니까 회사로 가져 왔다고 해서 이상히 생각할 것이므로 그대로 회사에 분납식으로 한다

면 6개월 내에는 2천만圓이 돌아올 것입니다.

◇ 朴贊圭의원

- 계약에 그런 조항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 劉正斗 의장

- 보았습니다.

◇ 朴贊圭의원

- 여하튼 목포시에 일임하는 것이 제일 낫겠습니다.

◇ 林一男의원

- 그것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1천만圓을 내주고 6개월후에 분납해서 납부하는 데는 한달에 3백만圓 정도에서 갚아준다 할 것인데 2천7백만圓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劉正斗 의장

- 여하튼 처분하는데 전원이 찬성하고 처분 방법에 있어서도 시장님에게 일임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전원 찬성 거수)

河시장님께서 처분을 일임하자는데는 찬성했는데 손해 안날 정도에서 河시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 明南喆의원

- 의장! 여기에 동장들이 모였는데 동회장님들에게 그 실정을 들어 보도록 참석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동회장님의 실정을 들어보자는 明南喆의원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 金永完의원

- 물론 동회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애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그렇다면 시행정에 있어서 각과 주무자가 서로 도와 일해 나갈 터인데 의회

에 무슨 일을 상정시키지도 않고 어느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어떻게 할까요.

◇ 金南鎭위원

- 동 행정이라는 것은 마땅히 시에서 원만이 밀어 주어야 할 것이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으로도 시장님께 호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동으로서도 동 행정상 운영면에 있어서 막대한 돈이 들 것 같고 운영할 수 없는 길에 처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이 모여 계시 모양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 1개동에 대해서 2백만圓 정도로 주는 모양인데 용지도 사 쓰고 하자면 상당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 李文吉의원

- 아까 金永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金南鎭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일정에 의해서 의사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미상)

- 동회장이 시청에 간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청 직원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朴贊圭의원

- 물론 동 행정에 있어 모든 애로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동장들은 동회장회라도 모든 실정을 호소를 했는지, 이런 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鄭應杓의원

-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논의해서 조사위원회까지 조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까지 선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동회장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점을 모르겠습니다.

◇ 李福柱의원

- 오늘 도선장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청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저희들끼리도 번영회나 경찰서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아까는 긴급동의로서 제출해 그것을 원만이 해결짓는다든지 그 문제를 부결시킨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등 모순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호소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본인들이 촉진위원이라든지 선정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원조비도 나오지 않고 동 자체로서 한푼의 경비도 동민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는 환경에서 동 운영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물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행정당국과 교섭해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동회장의 애로를 시의사당에서 호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당국에 호소할 일이 있으시면 명백한 계획서를 행정부를 통하여 상정해 주시면 검토한 후 결의를 보겠습니다. 그 점 알아 주시고 동회장님이 나와서 애로의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질서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李在洪의원

- 동회의 대책이라든지 월동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 金永完의원

-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회장이 자기네의 실정을 호소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동회출신 의원은 먼저 그 동의 실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장님도 그 동회 출신 의원한테 가서 이러한 애로가 있으니 어떻다든지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속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 먼저 그런 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

◇ 李文吉의원

- 동회장님은 시장 산하의 공무원으로서 있는 것인데 의회에 찾아와서 말하는 것은 질서가 틀린 것입니다.

◇ 李在洪의원

- 월동은 다가오고 동은 제일선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큰 지장을 운영상 초래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님의 동운영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서 긴급동의 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정식으로 이런 안건이 의회에서 행정부를 통하여 안을 들어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한번 묻겠습니다.

◇ 河東鉉 시장

- 물론 시장으로서 동 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상은 비단 목포시 뿐이 아니고 각 시·읍·면이 다 같습니다.

국고로서는 어디든지 운영하기 곤란한 이 마당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겠고 방금 월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월동 문제라 할 것 같으면 시청내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에게 월동비라는 명목아래 돈을 걷는 것도 국가법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金南鎭의원

- 옹당히 시의 책임자로서 21개동에 대한 실정을 모른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다 져야할 것입니다. 그간 시에서 별대책이 없어 동회장은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위촉된다고 해서 동직원의 손을 묶

어 놓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어떠한 방침으로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동에서 직원들이 공금을 유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더 요하고 싶습니다.

◇ 河東鉉 시장

- 동직원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점은 이후 각 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적절히 선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의 손을 꼭 묶어 놓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에서 동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기본 방침대로 대답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林一男의원

- 방금 시장님께서 동세를 걷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월동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좋은 안이 없으신가? 질문입니다.

◇ 朴贊圭의원

- 잠시 의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만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영해동 사무실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민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劉正斗 의장

-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모 의원을 통하여 사정 얘기를 했더니 입찰한 분이 포기하겠다고 그랬답니다.

◇ 鄭應杓의원

- 예산 관계로 각 동회에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사안입니다.

현재 시에서 한달 얼마씩 준다는 돈도 아마 4월부터 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만圓씩 주어 봤자 커다란 지장이 있는데 그나마 안주고 있기 때문에 부

특이 다른 돈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이 정도로 그치고 목포시 오물 처리에 관한 토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모양인데 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李福柱의원

- 오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오전 중에 분과위원회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6월 이래 분과위원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으나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성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적되어 가지고 있는 오물을 깨끗이 치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한 결과 위생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위생사무소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재정상 오물처리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있거니와 어떻게 하면 좀더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는데 사전에 결의하는 것은 위생사무소 장소를 찾다가 따로 옮겨 두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위생사무소를 다른 데다가 옮기는데 있어서는 지금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 보아서 시자체로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가지고 동회장님들과 교섭한 바 있어 동회에다가 이관하는 문제를 동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할 수 있다는 좋은 답변을 들었어요.

한편 목포시에서 인분이 약 10만 600통이 나가는데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자동차를 사는 문제도 협의했었는데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0만 약 600통을 이것만 자체판매로 일괄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위생시설을 하든지 동회에다가 이관해서 사무를 보게 해서 동 자체에서 징수해 가지고 시는 시대로 세금을 부쳐 미비된 시설을 확장시키고 나머지 돈이 있다면 모든 동회에다 배당해서 동회가 완전히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의를 하고자 여기서 타협한 결과 적절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 주

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상정하는 것입니다.

◇ 劉正斗 의장

-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볼까요.

◇ 河東鉉 시장

-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회에서 오물사무소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시에서 이때까지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시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시에 걸쳐 올 것 같으면 적절한 시설을 해드리고 따라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동회에서 오물을 처리하는데 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동회에다가 이것을 이관해 동에서 주관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마 용인 못할 것입니다.

◇ 鄭應杓의원

- 오물 처리에 대해서 金南鎭의원께서 동회장님과 타협해서 결정지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동회장님으로부터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동회장으로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文吉의원

- 문교사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동회에다가 이관시켜서 한다는 것은 위생사무소가 8개소가 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을 때부터 나는 여기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회에다가 위생사무소를 둔다면 거기에도 직원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저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陳福春의원

- 이것은 다 분과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 1항,2항은 가결시킨 것입니다.

◇李文吉의원

- 오늘 오물처리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표결에 붙일 것이지 동의에 개의가 없는 일입니다.

◇劉正斗 의장

- 그렇시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니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동회와 교섭해서 희망하는 동회에 인계를 해서 맡아주느냐 하는 것은 사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李福柱의원

- 9개동 이외의 동은 각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劉正斗 의장

- 그러면 동회장측 말씀을 해주십시오.

◇李文吉의원

- 한번 분과위원회에서 돌린 것을 지금와서 동회장을 불러 놓고 물어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소란)

◇李小圭의원

- 잘못 전달했습니다. 회의록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낭독)

◇劉正斗 의장

- 오물처리 있어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된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으면 이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물처리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같은 데서는 미인들이 있는 관계로 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부장관 명의로 대통령이 수준해 수레로는 인분을 퍼가지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회부에서 트럭으로 집단식을 만들어 하는 모양인데 우리 목포에

서는 일로면이라던가 먼 촌간에서 새벽에 나와도 늦고 그런 관계로 시간상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부산은 오후 5시부터면 5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있는 모양인데 목포지방에는 미인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각 경찰관서에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자 무) 이의 없으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 鄭應杓의원

- 그러면 적절한 의원을 선출하고 서장한테 교섭하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교섭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李文吉, 金南鎭, 鄭應杓,의원

◇ 陳福春의원

- 요사이 목요일에 휴간되어 시민들의 눈과 귀가 암흑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신문이 발간 안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아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속히 발간할 촉진위원 5명을 선출합시다. (긴급 동의 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러면 그 진상 조사위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가?

◇ 陳福春의원

-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조사위원 5명을 선출 호명하겠습니다.

金永完, 陳福春, 李在洪, 金南鎭, 吳世一의원,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 李文吉의원

- 제9차 임시회의에 있어서 잔교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사무 당국에서(자료 누락)

◇ 朴燦大 간사

- 그것은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 劉正斗 의장

- 그것은 월요일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하기로 합시다.

◇ 明南喆의원

- 그것은 기술면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吳在鵬

- 이것을 시설하는데는 적어도 2천만圓이 든다고 그러는데 전부 수리를 하려고 그랬으나 뜻대로 되지 않게 생겨서 우선 영해동 잔교만 남겨 놓고 공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明南喆의원

- 영해동 잔교는 아마 제일 긴급하게 그 공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하튼 기왕에 설비를 하는 것이니까 세군데를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吳在鵬

- 그것은 건설과장 자체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필요하지 않는가, 조금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추진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 劉正斗 의장

- 오늘 회의는 지리 하니까 이만 폐회하고 다음 회의 때하기로 합시다.

이것으로 제10회 목포시 임시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오후 5시 20분)

(다음 비밀회의로 들어감)

記錄者 金 曙 園